

의안 번호	1554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의안 제출

- 제출 일 : 2019. 5. 8.(수)
- 제출 자 : 중구청장
- 상임위 예비심사 : 2019. 5. 16. ~ 5. 22.
- 예결위원회 회부 : 2019. 5. 22.(수)
- 예결위원회 심사 : 2019. 5. 23.(목)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4. 예산안 규모

가.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제1회 추경안)	구성비 (%)	기정액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
합 계	400,954,801	100.00	367,961,206	32,993,595	8.97
일반회계	388,267,677	96.84	356,251,226	32,016,451	8.99
특별회계	12,687,124	3.16	11,709,980	977,144	8.34
의료급여기금	358,732	0.09	296,548	62,184	20.97
주차장	12,328,392	3.07	11,413,432	914,960	8.02

나.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제1회 추경안)	구성비 (%)	기정액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
총 계	400,954,801	100.00	367,961,206	32,993,595	8.97
지방세수입	39,020,000	9.73	39,020,000	0	0.00
세외수입	26,944,972	6.72	24,151,258	2,793,714	11.57
지방교부세	9,210,000	2.30	7,300,000	1,910,000	26.16
조정교부금등	69,748,740	17.40	66,187,740	3,561,000	5.38
보조금	225,147,120	56.15	214,029,516	11,117,604	5.19
국고보조금 등	149,860,191	37.38	144,616,716	5,243,475	3.63
시·도비보조금 등	75,286,929	18.78	69,412,800	5,874,129	8.46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0,883,969	7.70	17,272,692	13,611,277	78.80
보전수입 등	24,499,527	6.11	16,500,000	7,999,527	48.48
내부거래	6,384,442	1.59	772,692	5,611,750	726.26

- 2019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총액은 4,009억 5,48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세입 3,679억 6,120만 6천원보다 329억 9,359만 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 8.97% 세입이 증액편성 되었다.

-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및 전입금을 포함하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증가율이 78.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 순세계잉여금 : 20,324,820천원 -----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
- ▶ 보조금집행잔액 : 4,174,707천원 -----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
- ▶ 전입금 : 6,384,442천원 -----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분 (기능별)	예산액 (제1회 추경안)	구성비 (%)	기정액 (2019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
총 계	400,954,801	100.00	367,961,206	32,993,595	8.97
일반공공행정	18,930,029	4.72	14,679,386	4,250,643	28.96
공공질서 및 안전	15,720,777	3.92	13,659,441	2,061,336	15.09
교육	3,655,486	0.91	2,955,684	699,802	23.68
문화 및 관광	17,353,641	4.33	15,873,720	1,479,921	9.32
환경 보호	14,157,511	3.53	12,918,363	1,239,148	9.59
사회 복지	201,467,899	50.25	189,508,538	11,959,361	6.31
보건	11,822,191	2.95	10,907,228	914,963	8.39
농림해양수산	6,972,338	1.74	4,804,244	2,168,094	45.13
산업·중소기업	4,524,024	1.13	4,490,914	33,110	0.74
수송 및 교통	19,896,314	4.96	17,587,216	2,309,098	13.13
국토 및 지역개발	27,544,455	6.87	20,167,358	7,377,097	36.58
예비비	3,577,555	0.89	5,901,886	△2,324,331	△39.38
기타	55,332,581	13.80	54,507,228	825,353	1.51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액은 당초예산 3,679억 6,120만 6천원 보다 329억 9,359만 5천원이 증액된 4,009억 5,48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다.
-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50.2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이며,
-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가율은 농림해양수산 45.13%, 국토 및 지역개발 36.58%, 일반공공행정 28.96% 순으로 증액되었다.

라.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천원)

위원회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삭감액
합 계	400,954,801	367,961,206	32,993,595	188,124
의회운영위원회	2,099,237	2,088,691	10,546	0
일반회계	2,099,237	2,088,691	10,546	0
특별회계				
행정자치위원회	118,992,567	108,354,493	10,638,074	63,960
일반회계	118,992,567	108,354,493	10,638,074	63,960
특별회계				
복지건설위원회	279,862,997	257,518,022	22,344,975	124,164
일반회계	267,175,873	245,808,042	21,367,831	124,164
특별회계	12,687,124	11,709,980	977,144	

※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 : 별첨

5. 종합보고

가. 경과보고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5월 8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다.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보고

-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 ▶ 일반회계 3,882억 6,767만 7천원
 - ▶ 특별회계 126억 8,712만 4천원으로
 - ▶ **총 계 4,009억 5,480만 1천원이다.**
 - ▶ 당초예산(기정액) 3,679억 6,120만 6천원의 8.97%인 329억 9,35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한 결과,
 - ▶ 세입분야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어 삭감된 예산액이 없으며,
 - ▶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1억 8,812만 4천원 삭감되어 추경편성요구액의 0.57%를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 되었다.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입니다.
 -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안 반영되었으며,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일자리창출실 3,696만원,
 - 주민자치국 2,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
 - 복지경제국 1억 1,416만 4천원,
 - 안전도시국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원안 반영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삭감)조서」 를 참고 바람.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시행 2018.10.1.] [의회규칙 제37호, 2018.10.1., 일부개정] 중구 (의회사무국)

제71조(제안설명과 회부·부의) ① 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본예산안은 “구정연설”로 할 수 있으며, 추가 경정예산안은 필요할 경우로 한다)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의 세부 적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이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의 위원회 회부, 본회의 부 의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 등에 따른다.

1.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그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2. 제1호의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한다.
 3.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이유 없이 제2호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 제출 원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그 예비심사 결과 중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동의요청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동의여부를 예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종료 때까지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의장이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수정예산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실수 등의 사유로 편성·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수정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
1.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제2항에 따른다.
 2.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난 후 제출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해당 수정예산안을 접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번안을 위하여 이를 접수·회부할 수 있다.
 4.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는 처음 회부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